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06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허성무 · 어기구 · 장철민
안태준 · 오세희 · 이주희
이수진 · 이언주 · 김병주
윤준병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

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 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5호의2나목 중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을 “모방, 제2조제1호카목4)”로 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무단 사용 행위”로 하며, 같은 조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각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위반한 범죄에 한한다)

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각각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위반한 범죄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5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35의2.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u>모방</u>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u>기술적 보호 조치</u> 를 무력화하기 위한 <u>행위</u>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나. ----- ----- ----- ----- <u>모방, 제2조제1호 카목4)</u> ----- ----- <u>기술적 보호 조치 무력화 및 제2조제1호타목에 규정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무단 사용 행위</u>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u><신 설></u>	<u>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각각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위반한 범죄에 한한다)</u> <u>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각각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위반한 범죄에 한한다)</u>
---------------------------	---